

[사건명] 행심 2019 - 48

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

청구인 : ○○○

피청구인 : ○○학교장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은 2018. 12. 17.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- 가. 청구인이 ◉●군수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(이하 ‘이 사건 정보’라 한다)를 ◉◆◆◆◆◆청에 접수하였고, ◉◆◆◆◆◆청에서 2018. 12. 17.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였다고 하나,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.
- 나.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*****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, 2019. 4. 17. 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최종 이관되었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,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

않고 있기에 정보공개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니, 청구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III. 피청구인의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◆◆◆◆◆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1. 관계법령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1조

2. 판 단

가.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1)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(이하 ‘정보보유기관’이라 한다)이 ◎◎학교임을 알면서도, ◆◆◆◆◆청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송을 요청하였다.
- 2)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적이 없어, 정보공개 결정 또는 부존재 결정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함에 대한 판단

- 1)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인지 여부
 - 가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정보공개법」이라 한다) 제10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,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,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.
 - 나) 정보보유기관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을 「정보공개법」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「정보공개법」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(안건번호 10-0251)을 참고하면, 정보공개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,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」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그 청구를 이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
 - 다)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같이 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고 있으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「정보공개법」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

V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